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원실(형사지원심의관)	성 명	정재우
연 구 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연구책임자: 전현정)			
연 구 기 간	2023. 8. 21. ~ 2024. 12. 21.			
연 구 금 액	27,950,354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nput type="checkbox"/>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반의사불벌죄의 연혁, 도입경위, 취지 등을 고찰함으로써 친고죄와 구별되는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에 대해 규명하고 확인 ○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제도인 친고죄에 관한 외국의 규정과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비교법적 관점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그 기능과 필요성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진행 ○ 범죄 유형별로 반의사불벌죄가 갖는 실증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총 182명 답변)하였고,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경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범죄 유형별로 변호사 총 20명 및 활동가 2명(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과 함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각 범죄 유형별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의의와 기능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범죄 유형(형사법 분야, 의료 분야, 근로법 분야, 저작권 분야, 교통 분야)에 적합한 반의사불벌죄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과 결과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의사불벌죄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쟁점이 되는 형사법, 의료, 근로, 저작권, 교통 분야에서의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의 및 기능,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 변호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변호사 182명 답변)의 표본수가 유의미하게 확보되었고, 범죄 유형별로 변호사 총 20명 및 활동가 2명(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충실한 연구가 진행됨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각 범죄 유형(형사법 분야, 의료 분야, 근로법 분야, 저작권 분야, 교통 분야)의 특수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 후 각 범죄 유형별로 반의사불벌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적합한 반의사불벌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법 분야: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보복범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이는 피해자가 표하는 처벌불원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형법상 존속폭행, 존속협박죄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죄에 대하여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도출 - 의료법 분야: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의료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2차 피해,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도출 - 근로 분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임금체불 현황이 줄지 않는 것은 반의사불벌제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낮은 처벌 수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임. 따라서 현행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유지하되, 상습성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임금 시효를 연장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처벌 수위를 높여 적정 수준의 양형을 담보 		

	<p>하는 방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분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이용 계약을 통해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침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저작권자가 영세업자에 대한 횡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 교통 분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또는 보복의 위협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교통사고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여 수사기관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종용할 유인도 크지 않음.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도출 <p>○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단히 실용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논증 및 결과물을 보여주었음. 다만 해외 입법례, 해외 실무례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문헌 검토를 통한 학술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규정 현행 유지를 주장한 일부 분야(저작권 분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저작권자가 영세업자에 대한 횡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연구결과 활용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p>
공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비공개 사유	<input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p>2024. 5. 10.</p> <p>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